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2. 7. 16(화)
자치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전담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정원을 증원하고,
 -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대통령령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)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작운영을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집행기관의 정원 “738”을 “739”로 함.
※ 정원승인: 1명(수의6급1)
 - 총계란 “754”를 “755”로 함.
 - 조례시행에 따른 초과 현 원 4명(고용직)의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2003년2월28일까지 규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해수)

- 행자부의 관련 지침 시달에 의거,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하여 수의직 1명을 증원하고,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 4명을 2003년 2월 28일 까지 초과 정원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